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내용 중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

3. 주요내용

가.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 개정 (안 제4조 ~제8조)

나. 군 계획시설 관리규정 명확화(안 제10조 ~ 제12조)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(안 제14조의2) ☞규제완화

라.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포함될 내용 법령에 따라 신설(안 제17조의2)

마.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(안 제19조~제20조)

바.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(안 제23조의2)

사.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 삭제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적용 (안 제25조~안 제25조의2)

아.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법 개정 (안 제30조)

자.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·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명칭 변경 (안 제32조~제45조, 별표 1~21)

차. 용도지역 내 건축물 건축제한(건폐율, 용적률) 완화 (안 제49조, 제 52조~제54조)

카.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규정 개정 (안 제57, 제5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2015. 10. 22 ~ 11. 11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(안)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내용 중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입니다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4조～제8조에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
- 안 제10조～제12조에 군 계획시설 관리규정 명확화
- 안 제14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
- 안 제17조의2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법령에 따라 신설
- 안 제19조～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
- 안 제23조의2에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
- 안 제25조～제25조의2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 삭제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적용
- 안 제30조에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법 개정
- 안 제32조～제45조, 별표 1～21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·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명칭 변경
- 안 제49조, 제52조～제54조에 용도지역 내 건축물 건축제한 (건폐율, 용적률) 완화
- 안 제57, 제59조에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❍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